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27 발의연월일: 2022. 9. 2.

발 의 자:김상훈·김선교·송석준

엄태영 · 이명수 · 임병헌

최연숙 · 최형두 · 태영호

하영제 · 홍문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종합소득세,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음.

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,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95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 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9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5조(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	제95조(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
신고와 납부) ① ~ ⑤ (생	신고와 납부) ① ~ ⑤ (현행과
략)	같음)
<u><신 설></u>	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
	의 장은 납부할 개인지방소득
	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
	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
	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
	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
	<u>다.</u>